



MINI Market Report

국가	브라질
제품	주류(막걸리)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ONTENTS

I. 브라질 마케팅 방안	1
1. 브라질 시장 특징	1
2. 브라질 시장 전략 TIP	2
II. 브라질 시장 정보	3
1. 발효주 수입추이	3
2. 주류 소비 동향	5
III. 브라질 가격 정보	7
IV. 브라질 유통 정보	8
1. 유통 FLOW	8
2. 유통구조	9
V. 브라질 통관 정보	13
1. 관세 및 기타 세금	13
2. 수입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16
VI. 브라질 검역 정보	22
VII. 브라질 라벨링 정보	30
VIII. 브라질 바이어 정보	33

※ 참고자료

I 브라질 마케팅 방안

1. 현지 시장 특징

□ 브라질의 곡물 발효주 수입 증가

- 브라질의 2013년 곡물 발효주 수입량은 전년 대비 60% 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2013년 브라질의 대한민국 수입량은 전년 대비 1,725% 급증하여 상위 10위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브라질 주류 시장은 맥주가 주도

- 브라질에서는 맥주가 주류 시장에서 88.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맥주 시장으로 연간 1억 4,000만 헥터리터의 맥주를 소비하는데 이는 맥주로 유명한 독일보다 많은 양임
- 2010년 이후로 맥주 시장은 두 배로 성장하였으며, 국내 제품과 수입산 제품 판매 모두 증가하고 있음

□ 까다로운 수입 통관 제도

- 브라질은 통관이 어려운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통관 관련 필요서류 구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통관은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업체는 현지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상품분석표 등의 필요서류와 라벨링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지 시장 진출 TIP

□ 한국 식품 기업들에게는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

- 브라질의 수입통관 환경은 높은 세율 및 수입 사전허가 등 한국 식품들에게 까다로운 진출여건을 갖추고 있음
- 이 뿐만 아니라, 장기 국제운송(해상운송 30일 이상, 항공 2일 이상), 수입 장벽(높은 관세, 수입품목 제한), 통관지연(비효율성, 엄격한 통관심사), 관료주의(복잡한 서류, 유연성 부족), 인프라 부족(공항, 항만시설 낙후, 철도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장임
- 막걸리의 경우, 장거리 운송에 따른 유통기한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임

□ 막걸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

- 브라질 소비자들 대부분이 주류 중 맥주를 선호하고 있음에 따라 막걸리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매우 생소한 제품일 것임
- 이에, 한국 곡물발효주인 막걸리의 강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전개되어야 함
- 전통주 기업인 국순당의 경우, 2014년 6월 브라질 세계식품박람회에서 당사 막걸리 제품인 '아이싱' 과 '대박' 이 혁신제품에 선정되어 관심을 모으는 등 브라질 현지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음
- 국순당은 지난 2012년도에도 '2012 브라질 세계식품박람회'에 처음 출품해 '국순당 생막걸리'로 혁신제품에 선정되는 등 꾸준하게 브라질과 중남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II 브라질 시장 정보

1. 발효주 수입추이

□ 막걸리는 전체 식품 카테고리에서 HS CODE가 「2206.00.2030」로 파악되었음

< HS CODE >

2206.00	그 밖의 발효주
2206.00.20	곡물 발효주
2206.00.2030	탁주(막걸리)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HS CODE 「2206.00」에 대한 브라질의 2013년 수입 추이

순위	수출국가	무역지표					
		수입액 (USD)	점유율 (%)	수입량 (톤)	점유율 (%)	수입단가 (미달러)	수입량증감률 (2012년 대비, %)
	World	2,360,146		1,040,789		2.27	60.16
1	United States	1,408,387	59.67	819,236	78.71	1.72	72.45
2	Japan	610,516	25.87	106,204	10.20	5.75	-27.37
3	Italy	219,621	9.31	37,249	3.58	5.90	145.03
4	Ireland	78,180	3.31	46,086	4.43	1.70	-
5	Belgium	14,607	0.62	11,405	1.10	1.28	-
6	France	10,804	0.46	3,375	0.32	3.20	-48.63
7	South Korea	9,889	0.42	13,140	1.26	0.75	1725.00
8	Netherlands	3,920	0.17	1,922	0.18	2.04	-19.41
9	Spain	1,526	0.06	1,165	0.11	1.31	-19.10
10	Argentina	1,500	0.06	270	0.03	5.56	-

출처 : Global Trade Atlas (www.gtis.com/gta)

-
- 브라질은 2013년도 약 236만 달러 규모의 발효주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국에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이 있음
 - 브라질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였으며, 2013년 수입액이 약 140만 달러 규모를 수입하였고, 전체 수입액에 59.67%의 비중을 차지함
 - 2위는 일본으로 2013년 약 61만 달러 규모를 수입하였고, 전체 수입액에 9.31%의 비중을 차지
 - 이어서 이탈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프랑스 순으로 나타나며, 한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전체 7위에 해당되며, 2013년 약 9,000 달러 규모를 수입하였음
 - 브라질은 2012년과 대비하여 2013년에 60.16% 증가한 약 1만 407톤의 수입량을 기록하였음
 - 수입량으로 살펴보면, 1위 역시 미국으로 2013년 약 8,192톤을 수입하였고, 전체 수입량에 78.71%를 차지함
 - 그 다음 순으로는 일본이며, 2013년 약 1,062톤을 수입하였고, 전체 수입량에 10.20%를 차지하고 있음
 - 수입량에서 일본 다음 순서로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순이며, 각각 약 460톤, 372톤, 131톤으로 나타남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2012년 대비 1725%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수입 단가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단가는 KG당 2.27달러를 나타내며, 미국은 KG당 1.72달러를 보이고 있음
 - 단가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KG당 5.75달러인 반면, 단가가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으로 KG당 0.75달러로 조사됨

2. 주류 소비 동향

- 전체 인구 중에 약 38% 정도가 술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반적으로 여성 보다 남성이 3배 이상 술을 많이 마시며, 18세~44세의 사람들이 술을 즐겨 마시는 것으로 관측
- 한편, 45세 이상의 브라질 사람들의 술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관측
- 브라질의 주류 소비는 전 지역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북동, 북, 중동 지역에는 남부 지역보다 더 많은 스피리츠를 소비하며 와인은 북부 지방보다는 남부 지방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맥주는 전 지역에 걸쳐 꾸준히 소비하는 경향을 보임

<브라질 지역별 주류 소비>

종류	North	Northeast	Midwest	South	Southeast
Beer	55%	61%	63%	61%	61%
Wine	26%	18%	24%	29%	27%
Spirits	18%	20%	12%	9%	9%

출처 : 데이터모니터

-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맥주 시장으로 연간 1억 4,000만 헥터리터의 맥주를 소비하는데 이는 맥주로 유명한 독일보다 많은 양임
- 2010년 이후로 맥주 시장은 두 배로 성장하였으며, 국내 제품과 수입산 제품 판매 모두 증가하고 있음
- 브라질에서는 맥주가 주류 시장에서 88.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증류액이 7.5% 그 외 나머지 주류들이 3.6%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브라질의 와인 시장은 다양한 종류와 국내법 때문에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와인 시장은 일반 와인과 고급 와인으로 구분됨
- 이 중에서 일반 와인이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추산됨

- 브라질에서는 연간 1억 1,500만 병의 와인이 소비가 되고 있으며 와인의 80%가 18 헤알 이상의 가격을 보이고 있음
 - 레드 와인이 85%, 화이트 와인이 15%의 소비를 보이고 있고 수입 산이 73%로 국내 산 27% 보다 더 많은 소비를 보이고 있음
 - 브라질로 수입되는 와인들은 아르헨티나, 칠레가 전체 수입량의 63.29%를 차지하고 있음
- 브라질의 스피리츠 시장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한 가운데, 스피리츠 판매는 60% 가량이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음
- 맥주의 큰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스피리츠 시장은 2011년에 2,550만 헤알을 기록하였으며, 5년간 23.6% 상승하였음

<브라질의 스피리츠 소비율>

Spirits	소비율
Cachaca	66%
Whisky	24%
Vodka	28%
Brandy	23%
Rum	13%
Others	4%

출처 : 데이터모니터

- 보드카, 카사사, 위스키, 럼주와 같은 높은 도수의 주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III 브라질 가격 정보

□ 브라질 현지 판매 사이트에서 막걸리 제품을 찾기 어려움에 따라 다른 주류 제품 가격을 조사하였음

－ 브라질 맥주 판매 가격

업체명	Alpirsbacher	König Pilsener	Licher
제품 이미지			
가격	R\$18,90 (USD 7.69)	R\$9,99 (USD 4.06)	R\$12,99 (USD 5.28)

출처 : www.stuttgart.com.br

－ 브라질 와인 판매 가격

업체명	G.A.M Shiraz	Monastério de San Prudêncio Tinto	Reservado Cabernet Sauvignon
제품 이미지			
특징	Red wine(호주산)	Red wine(스페인산)	Red wine(칠레산)
가격	R\$197,48 (USD 80.73)	R\$30,13 (USD 12.26)	R\$23,45 (USD 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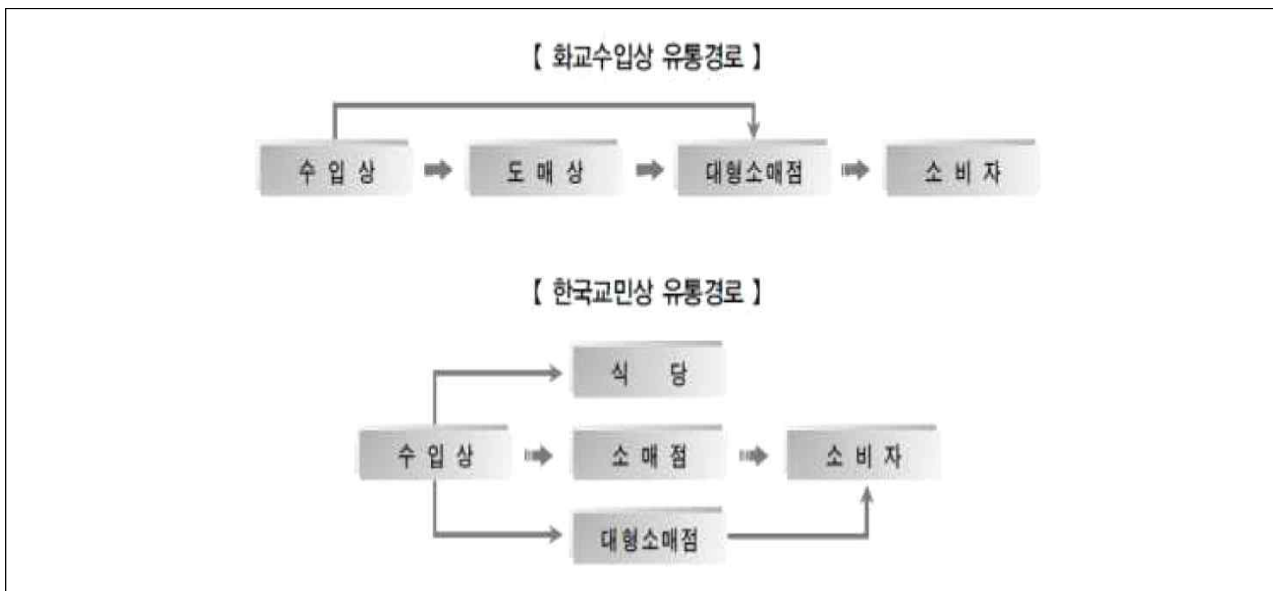
출처 : <http://www.winestore.com.br/loja/>

IV 브라질 유통 정보

1. 유통 FLOW

- 현지 수입 유통경로는 대형 유통도매시장이 없어 중소형 도매상들이 자체 냉장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구매를 하는 형태이며, 대형업체의 경우 수입업체에서 주문서에 따라 배달하는 형태임
- 물류저장 창고 부족 및 낙후된 도로사정으로 육로를 통한 내륙 운송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수입과일은 자카르타와 일부 근교도시 등에서 소비됨

< 유통절차 >



출처 : KATI (<http://www.kati.net/>)

2. 브라질 유통구조

□ 브라질 유통동향

- 브라질 유통산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4%(CAGR)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6%가 넘는 높은 경제성장과 중산층의 확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보다는 쇼핑의 편리함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마켓 및 온라인쇼핑 등 현대적 유통채널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 브라질의 대형 쇼핑몰은 소비자들의 원스톱 쇼핑 수요에 부응해 전자제품과 패션의류는 물론 식품, 의류 등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에 하이퍼마켓 입점을 확대하는 추세
- 최근 브라질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현재 10억~30억 달러 규모인 온라인시장 산업은 성장곡선을 그리며 2년 후에는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유통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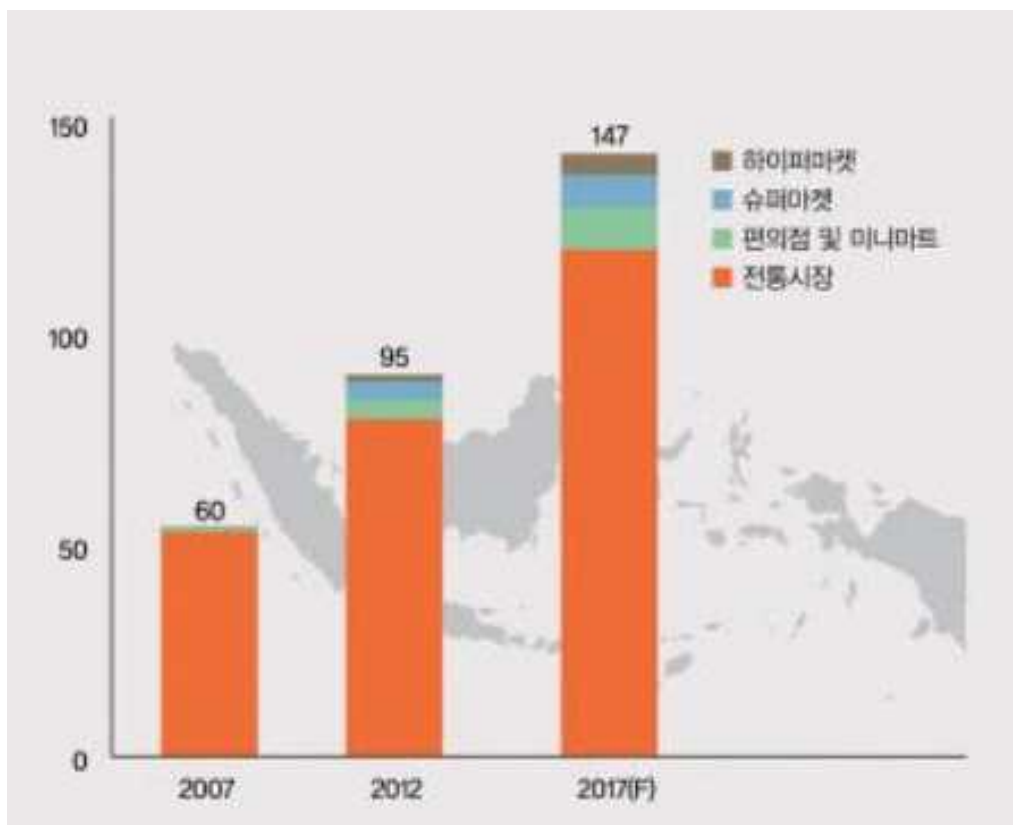
- 브라질의 현대적 유통채널은 크게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미니마켓(편의점)으로 구성됨
- 하이퍼마켓은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을 결합한 소매점으로 저렴한 가격이 장점임. 슈퍼마켓은 식품 및 가정용품을 소규모로 판매하며, 미니마켓은 슈퍼마켓과 유사한 품목 취급하지만 규모가 작음
- 하이퍼마켓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의 대표적인 유통 채널로 성장함. 반면, 슈퍼마켓은 점포 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쇠퇴기를 겪고 있음
-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브라질은 2017년까지 인터넷 사용자 수가 두 배인 1억 2,5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스마트폰 사용자도 현재의 20%에서 같은 기간에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브라질 e-commerce업체인 Vela Asia은 작년 브라질 온라인시장 규모는 미화 80억

달러 규모였으며, 2016년에는 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주로 의료, 전자제품, 가전제품 및 화장품임. 최근 일부 인터넷쇼핑 업체들은 특정 제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Google 브라질과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Talyor Nelson Sofres(TNS)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브라질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주로 구입하는 품목은 전자기기나 신발에 비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비교적 적은 의류임

<브라질 유통시장 규모 및 채널별 점유율>

(단위 : 10억 달러)



- 브라질은 아직까지 전반적인 유통 시스템 정비가 미흡한 편이나 외국기업의 소매업 참여가 허용된 이후 하이퍼마켓, 까르푸, 롯데마트 등 체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 소매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롯데마트는 2010년 5월 기존 마크로를 인수해 자카르타에 진출한 이후 불과 3년여만에 브라질에 32호 매장을 오픈하는 등 엄청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지극히 단순하여 수입상이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직접 수요

자에게 판매하거나, 대형 유통업자가 직접 수입하여 수요자에게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일반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는 입찰 등을 통해 브라질 정부의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현지 업체가 직접 소요분을 조달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글로벌 브랜드 제품의 경우 대부분 현지에 개설된 대리점이나 지사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 자본재 분야의 전문 상가는 아직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등 최근 시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전문상가들이 빠르게 형성되어 가는 추세임

□ 수입품의 유통마진

- 수입의 경우 직수입과 간접수입이 있으며, 직수입의 경우는 백화점,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원자재 수입 등이 해당됨. 간접수입은 통상 브로커, 에이전트, 정부 대행기관, 등록된 무역상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입대행 수수료는 평균 2~10% 수준임
- 수요자에 의한 직수입이 아닌 간접수입의 경우 수입제품은 통상 수입가격에 15~30%의 마진이 가산되어 소매상 또는 중간규모 유통업체에 인도되며, 여기에 소매상이나 중간 유통업체가 다시 약 30% 정도 마진을 붙이게 되므로 최종 수요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수입가격(CIF)+수입세+부가세+(기타 부과금 및 특소세)+수수료 및 기타경비 등을 포함해 수입가의 약 200%에 이르게 됨
- 이에 따라 통상 브라질의 경우 바이어가 총 수입가의 50~100% 이상의 유통 마진을 예상, 기대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므로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브라질 시장 특징

① 화교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 브라질은 동남아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화교 자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브라질의 화교는 약 1,000만명 이하로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나 특유의 빠른 상술로 브라질 상권을 장악하고 있음

-
- 1960년대 말 브라질 내에서 일어났던 공산당 쿠데타가 진압된 이후 화교들은 공직 진출이 제한되는 등 정치적 탄압을 받아 대부분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브라질 상장 기업 중 화교 자본의 비중이 약 70%에 달할 정도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저가품과 고급품으로 양분된 시장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격이 소비재 바이어의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 요인으로 자리잡아왔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루피아의 평가절하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이 브라질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였음
- 그러나 이후 경제호조에 따른 루피아 평가절상으로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성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자본재와 사치품 분야에 있어서는 가격 못지않게 브랜드나 A/S를 중시하는 고급품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음

V 브라질 통관 정보

1. 관세 및 기타 세금

☐ 관세율

HS CODE	국문품명	관세율
2206.00	기타 발효주	기본 세율 : 20%

☐ 브라질의 관세 제도

- 브라질은 1995년 발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통관세(CET :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고 있음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를 통해역외 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들 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대부분의 역내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설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별도의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규율됨
- HS코드와 마찬가지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코드)은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음
-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통관세는 2013년 8월을 기준으로 총 10,029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 2012년 7월 베네수엘라 남미공동시장 신규 가입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1990년 32%)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이며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임
-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는 종가 관세(ad valorem tariffs)임

-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소해 오던 평균 수입관세는 2007년부터 점차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 10.61%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수입 관세율은 10.6%임
-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원자재(평균 8~9%)나 반가공품(평균 11.9%)은 완성품(평균 15.8%) 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대외공통관세 적용의 예외로서, 자본재(capital goods), 정보통신(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제품 등 일부 품목은 특혜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0~2%의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품목리스트 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음
- 동 제도 적용(2012년 10월 1일 발효)에 따라 브라질의 해당 100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음
- 2013년 8월 1일 Mantega 브라질 재무장관은 100개 예외품목 시행의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주무부서인 개발상 공부 측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상충된 입장을 밝히는 등 동 조치 관련 정부가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바 있음

□ 복잡한 세금 체계

-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II) 외에도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부가 가치세인공산품세(IPI)와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인 상품유통 및 서비스세(ICMS), 사회보장세(Pis/Cofins)를 부담하여야 함
- 공산품세(IPI)의 경우, 국산제품은 판매시점에, 수입제품은 통관 시에 부과됨
- 공산품세는 부가가치세이므로 판매시점에 최종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며, 이는 판매자의 매출세액으로 계산되어 추후 매입세액(통관시지불한세액)과 함께 정산할 수 있음
- 공산품세는 브라질 내 최종소비자에게 얼마나 긴요한 품목인가의 정도에 따라 세율을 최저 0%에서 최고 300%(담배 등)까지 적용
- 상품유통·서비스세(ICMS)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국산 제품과 수입제품

모두에 적용

- 수입제품의 경우 CIF+관세+공산품세가 적용된 가격에 부과됨
- ICMS는 공산품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전가됨
- ICMS 세율은 주 별로 12~18%이며 주 경계 밖으로 상품이 이동할 때에는 목적지 주 정부의 세율이 적용됨
- 수출상품이나 건설 서비스, 광업, 전기에너지, 액체 및 가스 연료, 국내생산기계와 장비제품에는 ICMS가 면제됨
- 사회보장세(Pis/Cofins)의 경우, 과거에는 국산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2005년 4월부터는 수입제품에도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 Pis / Cofins 세율은 9.25%로 CIF+관세+공산품세+상품유통 서비스세를 합산한 가격에 부과됨
- 이렇게 복잡한 세금체계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증방식의 세금계산과 맞물려 수입 가격이 거의 배로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함
- 세계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브라질이 세금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2,600시간으로 OECD 국가의 187시간 대비 14배 이상 소요되는데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세금체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됨을 염두에 두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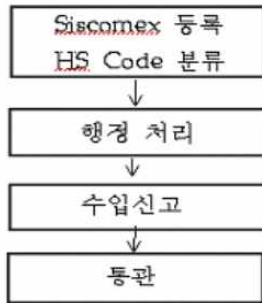
2. 수입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 브라질의 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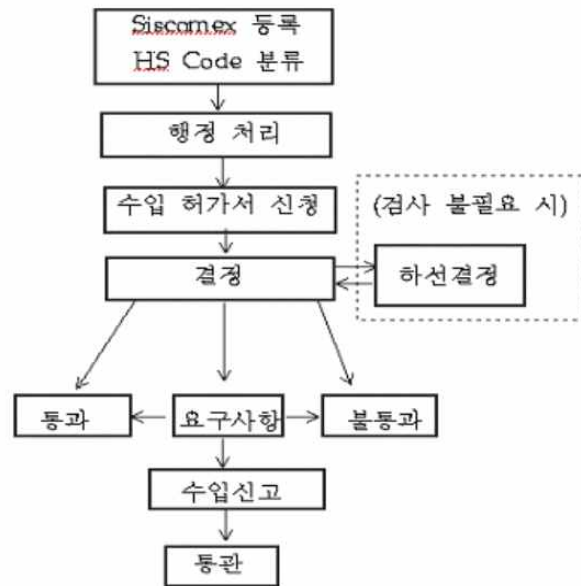
1) 수입 신고

- 브라질 내 수입업자는 개발상공부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을 해야만, 무역 자동화 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음
- 대외무역국은 1997년 1월부터 무역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상당수 품목이 수입 자동 허가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
- 대외무역국 등록은 무역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첫 번째 거래 시 납세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최소자본금 구비 요건 등을 갖춰야하는 등 수입업자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음
- 다만, 2007년부터 무역 자동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됨으로써, 무역등록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고, 관련 비용들도 무역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도록 개선되었음
- 한편, 수입 관련불법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지급기간이 360일을 초과하는 수입 거래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함
- 상품이 브라질에 반입되면 브라질 관세법을 적용 받게 되며 내국 물품화를 위한 통관 절차를 밟게 됨
- 일단 도착한 화물은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 보세창고에 보관됨
- 수입자 또는 통관사는 수입신고(Declaracao de Importacao : DI)의 절차를 밟아야 함
- 수입신고는 SISCOMEX(전자 무역시스템)를 통해하며 수입세(Imposto de Importacao), 공업 제품세(IPI), SISCOMEX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수입허가서(LI)가 필요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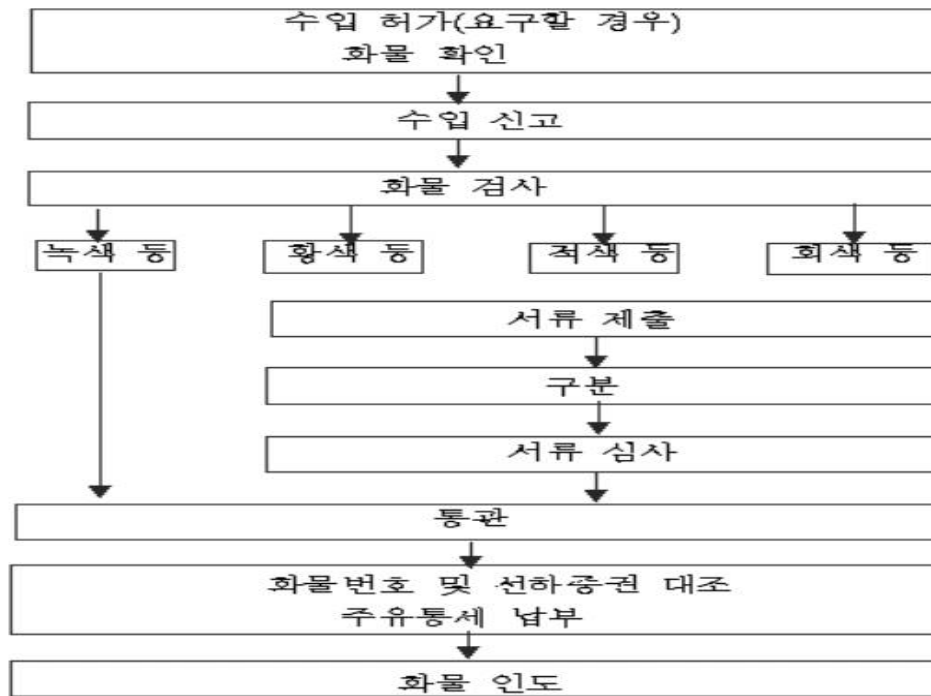
수입허가서(LI)가 필요한 경우



- 모든 세금 및 비용 납부가 완료되고 화물 검사 및 화주 확인이 끝나면 연방 세무국은 SISCOMEX를 통해 수입면장(Comprovante de Importacao)을 발급하며, 이것으로 통관이 완료됨
- 제출서류 :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증(LI), 선하증권(Conhecimento de Embarque), Commercial invoice 등이나, 각 화물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름

2) 물품 검사

- 수입신고를 완료하면 SISCOMEX는 자동적으로 세관 반출을 위한 화물검사를 지시
- 화물검사는 녹색, 황색, 적색, 회색채널의 4가지로 구분
 - 녹색 : 자동 통관
 - 황색 : 서류심사 필요
 - 적색 : 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 회색 : 서류 및 화물의 정밀 검사



- 자동 통관인 녹색채널을 제외한 기타 세관 검사는 수입자가 연방 세무서에 직접 수입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브라질은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협상국 중 통관절차 및 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국가로 분류됨
- 브라질 연방 세무국은 2012년 3월 19일부터 “Operacao Mare Vermelha”로 불리는 화물 검사 강화 조치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저가 상품이 다량 유입돼 브라질 국산품이 큰 피해를 입는 섬유, 신발, 장난감, 전자제품, 안경제품, 플라스틱 제품, 기계장비분야의 제품 반입 시에 세관 검사를 까다롭게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Mare Vermelha가 시작된 지 한 달 동안 2만 6,000건 화물이 Canal Vermelho로 분류돼 서류 심사와 화물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화물검사 강화 조치로 세관에 압류된 화물은 총 3,500만 헤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류 조치된 화물의 화주들은 연방 세무국의 각종 요구(샘플 제출, 기술 검사 등)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해 통관이 18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브라질 연방 세무국은 현재 실시 중인 Mare Vermelha가 종료된 이후에도 또 다른

수입통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서 브라질 수출 시 통관이 지연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 통관 절차 소요시간은 원칙적으로 48시간 내 이루어져야 하나, 반입품의 채널 배정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 통관비용은 반입품의 Gross Weight, Net Weight 그리고 물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예를 들어 IT Software를 저장한 외장하드디스크의 경우 본 무게는 1kg 미만이지만 상품가치가 높아 10kg의 자동차 부품과 비슷한 통관비용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음
- 브라질의 경우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세관의 파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을 진행하고, 그 진행속도는 현저히 줄어듦
-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제품에 대해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2012년 8월 무역국 산하에 국가통관운영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거짓 신고를 포함한 조세 회피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 세관원이 수입제품의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8일 기간 내에 새로운 관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음
- 수입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 2013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로 물품을 수입하는데 걸리는 시일은(평균 17일) 최근 3년간 변화가 없었으나, 컨테이너당 소요되는 비용은 2009~13년간 거의 두 배(2,275미불)로 증가하였음
- 주요 요인은 브라질 항구의 적체 및 관련 공공 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음

□ 통관 업체

-
- 브라질 통관 업무는 과정이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전문 통관사를 고용하는 편이 좋음
 - 복잡한 통관업무 때문에 브라질 고객들도 통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브라질에는 한인교포가 운영하는 통관업체나 한인 통관사를 둔 업체들도 있어 포르투갈어 이해가 어려운 고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음

1) AGS Customs Clearance / Importation

- 주소 : Rua Martin Afonso 24, CJ 91/92, Centro, Santos, Sao Paulo,
- Tel : (55-13) 3202-2330
- Site : www.agsdespachos.com.br
- 한인 통관사 : Mr. Jae (55-11) 9800-4226
- 수입 / 통관 업무 대행

2) Orense

- Tel : (55-11) 3431-3004 / (55-11) 8458-2540
- 한인 교포 운영, 수출입 통관 업무 대행

3) Fenicios Servicos e Logistica INTL. LTDA

- 주소 : Rua Dr.Cesar, 530 CONJ. 702 Santana, Sao Paulo
- Tel : (55-11) 2283-2439
- Site : www.fenicios.net.br
- 한인 교포 운영, 수출입 통관 업무 대행

4) News Kobras

- 주소 : Rua Jos  Paulino, 756 CONJ. 503-505, Bom retiro Sao Paulo
- Tel : (55-11) 3311-9540
- Fax : (55-11) 3229-1049
- Site : www.agsdespachos.com.br
- 한인 교포 운영, 수출입 통관 업무 대행

5) HYC Logistics

-
- 주소 : Av.Paulista 777,6 andar, Sao Paulo
 - Tel : (55-11) 2171-4400
 - Fax : (55-11) 3289-8631
 - Site : www.hyc.com.br
 - 한인 교포 운영, 수출입 통관 업무 대행

VI 브라질 검역 정보

□ 표준 및 검역

- 브라질에 있어서 인증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이지만 건강, 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을 받아야 함
- 또한 브라질은 수입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였을 경우 수출국에서 시행한 검사를 인정해 주고 있음
- 그밖에 동식물, 육류, 어류, 낙농품, 가공식품 및 음료수 등에 대해서는 동식물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용도 밀, 토마토 씨앗 등 일부 식물류에 대하여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 위생 검역 통제

- 브라질 보건부 및 농업부에서는 1959년 10월 5일자 관보를 통해 농축산물, 의료용품, 화학품, 식품 등 240여개 품목의 수입 시 사전 수입허가서(License for Import)를 받도록 발표하였음
- 세부 적용대상 품목을 보면 브라질 보건부 관할 품목에는 폴리머, 산, 섬유소 및 부품, 고무, 껌, 샴푸, 조미료, 비료, 화장품, 향수, 농약, 의료용품 등 240여개 품목이며, 농업부 관할 품목에는 동식물, 야채 및 과일, 커피, 곡물, 제분공업용 제품, 씨앗, 식용 오일, 음료, 과일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들 품목에 대해 만약 사전 수입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각 행정기관의 등록기관이나 세관 내 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
- 1999년 11월에 브라질 정부는 나무상자를 이용한 선적과 목재 포장용기에 담긴 선적품에 대하여 열이나 훈증 소독증명서를 요구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음
- 이 조치는 중국형 풍뎅이에 의해 번지는 페스트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치로서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미국 등에 대하여 2000년 1월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음
- 또한 브라질 정부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수입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강제 인증 제도

- 브라질에서는 업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하거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수의 품목만이 인증 취득을 의무화 함
- 공인기관의 각종 검사를 거쳐 강제적인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일부뿐으로(하기 리스트 참조), 브라질 정부는 품질 및 안전 여부가 중요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로 인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에서는 국제적인 인증인 IEC, ISO 등의 규정에 준수하여 품질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브라질 자체 품질검사인 SBAC(Sistema Brasileiro de Avaliação de Conformidade)의 규정도 적용하고 있음
- 인증기관의 경우 INMETRO, IPEM 등을 비롯한 국내 기관을 통해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라질과 MRA를 체결한 외국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한 인증서의 내용도 국내에서 인정함
- 현재 INMETRO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미국 등의 인증기관과 MRA 를 체결하였으며, 브라질과 MRA를 체결한 한국 인증기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WTO의 원칙에 근거하여 품질인증 검사를 위해 적용하는 규정은 국산품이나 수입품 구분 없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정보통신 관련 제품 대부분의 경우 ANATEL(국가정보통신국)을 통해 강제인증 취득 및 업체 등록을 마쳐야 브라질 시장 내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주관 기관, 검사 및 시험 기관

1) INMETRO (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de Normalização e Qualidade Industrial) : 도량형 및 품질 관리국

- 동 기관은 통상 산업개발부 소속으로 본부는 리우 데 자네이루 시에 위치

- 각종 제품의 품질검사를 주관하며, 기준에 합당한 제품에 한해서 품질인증서를 발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각종 제품의 물리 화학적 도량형을 연구, 표준 도량형을 규정
- 각 업체에게 제품 관련 표준규정을 통보, 업체로 하여금 항상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유도
- 전문 인증기관으로 활동하기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테스트를 거친 후 공인된 인증기관 자격을 부여하며 인증 관련 기술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 품질 인증 : INMETRO의 규정에 따른 품질 인증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수 시험 결과 검토 및 품질 인정 공인된 기관을 통해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에게 품질보증 실(Seal) 부착

- INMETRO - 본부

- 주소: Rua Santa Alexandrina, 416- 5º andar, Rio Comprido - Rio de Janeiro - RJ, CEP: 20261-232, Brazil
- 전화: 0800- 285-1818 FAX: (21) 2563-2970
- E-Mail: homepage@inmetro.com.br
- Site: www.inmetro.gov.br

2) IPEM (Istituto de Pesos e Medidas) : 도량형, 품질관리국

- 주정부 소속 기관으로 INMETRO와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INMETRO와 더불어 각종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규격 등을 검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각 주별로 별도의 기관이 있음

- 상파울루 주의 경우 IPEM-SP (IPEM 상파울루 지국)이 있음

- IPEM- SP

- 주소: Rua Santa Cruz, nº 1.922 - 7º andar - Vila, Cep 04122-002 Gumerindo, São Paulo, SP, Brazil
- Phone / Fax : (55-11) 5085.2602 / 5085.2603
- E-mail : gabinete-ipem@ipem.sp.gov.br
- Site : www.ipem.sp.gov.br

3)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내 외 전문 인증기관

-
- OCS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 de Qualidade)
 - 특징 : 시스템의 품질 인증
 - 적용 규정 : ABNT, ISO9001
 - 기관수 : 브라질(29), 아르헨티나(1), 베네수엘라(1), 우루과이(2), 미국(1)

 - OCP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Produto)
 - 특징 : 제품 품질 인증
 - 적용 규정 : 제품에 따라 각종 국내 및 해외 규정을 적용
 - 기관수 : 브라질 (50), 아르헨티나(3), 코스타리카(1), 베네수엘라(1)

 - OCA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 de Gestão Ambiental)
 - 특징 : 환경관리 시스템 인증
 - 적용 규정 : NBR ISO 14001
 - 기관 수 : 브라질 (17), 아르헨티나(1), 미국(1), 우루과이(1)

 - OHC (Organismos de Certificação de Sistema de Gestão da Análise de Perigos e Pontos Críticos de Controle)
 - 특징 : 식품안전 관련 인증
 - 적용 규정 : ABNT NBR 14900
 - 기관수 : 브라질 (1)

 - OPC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Pessoas)
 - 특징 : 인력품질 인증
 - 적용 규정 : SBAC
 - 기관수 : 브라질 (7)

 - OCF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Manejo de Florestas)
 - 특징 : 삼림관리 관련 인증
 - 적용 규정 : NBR 14789
 - 기관 수 : 브라질 (2)

 - OCE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s de Gestão da Qualidade NBR 15100)
 - 특징 : 우주공학 관련 프로젝트, 건축물,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 적용 규정 : NBR 15100
 - 기관 수 : 브라질 (3)

- OCQ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s de Gestão da Qualidade QS9000)
 - 특징 : QS 9000 관련 인증
 - 적용 규정 : QS 9000
 - 기관 수 : 브라질 (11), 아르헨티나(1)
- OCO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s de Gestão da Qualidade de Empresas de Serviços e Obras na Construção Civil (SiAC/PBQP-H))
 - 특징 : 건축공사 관련 품질인증
 - 적용 규정 : PBQP-H
 - 기관 수 : 브라질 (9)

4) ANATEL (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 : 국가정보통신국

- 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으로 통신 기기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함
- 통신기기 업체들은 동 기관이 인정하는 인증기관 및 시험 기관을 통해 품질인증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브라질 시장내 유통이 가능함.
- Anatel - 본부
 - 주소 : SAUS Quadra 06 Blocos C, E, F e H, CEP 70.070-940 - Brasília - DF, Brazil
 - 전화 : (55 61) 2312-2000
 - Fax : (55 61) 2312-2264
- Anatel - 상파울루 지국
 - 주소 : Rua Vergueiro, 3073, Vila Mariana - CEP 04101-300 São Paulo/SP
 - 전화: (55 11) 2104-8800
 - FAX : (55 11) 2104-8815

□ 강제인증 품목

- 강제인증은 제작 과정이나, 사용법, 유통과정에서 개인 안전이나, 공중위생, 환경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함

－ 현재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취득 품목은 총 42개로 다음과 같음

인증 품목	
강철봉 및 강철사	교류 형 안전장치(stabilizer) - 250V, 3KVA 이하
전기 흡수기	소화기 제조 및 수입 과정
아동용 자전거	디젤 오일용 필터
장난감 *안전 여부 검사	안전 성냥
PVC 케이블 (1KV이하)	퓨즈
케이블 (750V 이하)	가정용 아날로그 방식 전류 차단기 (440V 이하)
모토 사이클 용 헬멧	우유 (이유식) 병
버스 차체 *규격 검사	가정용 LPG 가스용 플라스틱 호스
차량용 메탄가스 저장용 철제 실린더(불합하지 않은 모델)	가정용 아날로그 식 플러그 및 콘센트
차량용 메탄가스 저장용 경합금(Light Alloy) 실린 더	승용차, 트럭, 버스용 타이어 신제품
연료 주입 시스템 부속품	모토 사이클용 타이어
차량용 천연가스 주입 시스템 부속품	화물차용 중고 타이어
PVC로 감싼 컨덕터(conductor) (전압:450/750V)	라텍스 콘돔
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	튜브 형광등용 스타터(Starter) - 교류식
컨테이너 탑재 장치 *제조과정 검사	튜브 형광등용 스타터(Starter)
차축(Vehicular axle) *제조과정 검사	철제 가스통 (250 L 이하)
알코올 용 플라스틱 포장 용기	LPG 가스 압력 조절기 (4 kg/h 이하)
안전성냥 육로 수송용 포장용기	주유소용 지하 연료 저장 탱크
위험물 육로 수송용 포장 용기	비금속 소재 차량 연료 지하 수송용 튜브
폭발 위험 환경 사용용 전기 기기	컨테이너 수송용 차량 * 제작 및 설치
전기의료기기	차량용 안전 유리

출처 : INMETRO

－ Anatel이 강제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3개 분야로 분류됨

-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기 단말기 등
-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I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광 케이블, 다중통신 전자시스템(Multiplex), 라우터 (router) 등

□ 강제인증 승인 절차 (INMETRO, IPEM 인증)

- ① 인증 신청 양식지 (formulario 12) 작성
 - OCIPEM (<http://www.ocipem.sp.gov.br/>)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② 증빙서류 [Contrato Social(업체 대표, 재무구조 등을 명시한 서류), CNPJ(사업자 등록증)] 구비
- ③ 업체 대표 서명이 날인된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OCIPEM에 우편 송부 또는 직접 제출
- ④ 인증 취득 신청 절차 통보 : 인증 신청서 검토 후, 인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한해서 OCIPEM은 인증 취득 신청 절차 및 검사 비용 등을 통보함
- ⑤ OCIPEM은 각종 제품 품질 검사 결과를 종합, 인증 승인 가능성을 판단함

□ 품질 보증의 유형

- 품질 인증(Certificacao) : 시스템 또는 제품에 관련된 인증으로, INMETRO가 인정하는 시험 기관을 통해 각종 품질 테스트를 마친 후 취득함.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품목은 물론 제조(수입)업체가 구매자의 요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 납품업체 품질보증서(Declaracao do Fornecedor) : 제조업체 또는 납품업체가 작성한 품질 보증서로, 대부분의 구매 업체는 INMETRO의 검토 및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공정검사(Inspeccao) :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로 구매업체의 검사관 또는 INMETRO가 인정하는 전문 검사관이 납품업체를 방문하여 제조 환경 및 공정을 검사함. INMETRO로부터 품질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중 일부임
- 품질보증마크(Etiquetagem) : 각종 테스트에 합격한 후 취득할 수 있는 품질보증마크로 INMETRO의 로고가 부착됨. 업체들이 유통 및 판매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강제인증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단, 품질보증 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 유통할 때는 INMETRO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정에 위반되는 품질의 제품이 발견될 경우 제품을 모두 압수당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품질 테스트(Ensaio) :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제품 또는 구매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품질검사가 필요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INMETRO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해 다양한 품질 테스트가 실시됨

□ 미 이행 시 제재 사항

- 강제인증을 요구하는 모든 제품은 INMETRO가 보장하는 품질보증 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됨
- INMTERO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유통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착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은 가압류 처분을 당함
- 품질인증 미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120일 내에 해당 제품은 무기한 압류 처분을 당하며, 제조업체 또는 수입 업체는 정식으로 고발 조치됨

VII 브라질 라벨링 정보

□ 식품 라벨링 규정

- 식품에 첨부하는 라벨에 관한 일반규칙은 ANVISA에 의한 2011년 9월 20일자 결의 259호에 정해져 있음
- 동 결의에 가공식품표시에 관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 식품명
 - 원재료일람
 - 내용량(정량)
 - 원산지
 -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로트식별 : L 에 이어서 회사코드, 제조일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함
 - 유통(소비)시간
 - 특별히 필요한 취급 사항
 - 조리법이나 사용법의 설명(필요에 의해서)
- 또한 2003년 12월 23일자 RDC결의 359호에는 라벨에 필요한 식품의 용량표시에 관한 기술적 규칙이 정해져 있음
- 특히 2003년 12월 23일자 RDC 결의 360 호에는 포장된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음
- 동 결의에서 정해져있는 표시의무사항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총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식물성유, 나트륨 정보임
- 단, 360호에 관해서는 알코올음료 및 음료수, 사탕 등 일부의 식품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브라질에 특징적인 점은, 가공식품에 글루텐의 함유에 관한 표시를 하는 점임
- 이것은 2003년 5월 16일자 법령 10,674호에 의해 정해져 있음

- 밀 관련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글루텐의 장내흡수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세리악” 환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무로 모든 가공식품에 적용
- 이를 위해서 실제의 식품을 보면 “CONTEM GLUTEN” (글루텐을 포함함) 또는 “NAO CONTEM GLUTEN”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음) 라는 씬이 패키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많음
- 캄피나스 대학 식품공학부(Food Engineering Department)에서는 캄피나스 지역에서 수입 판매되고 있는 약 120종류의 제품을 분석하였음
- 이 조사에서는 표시의 오류나 실수가 555건 발견 됨
- 필수정보에 오역이나 포르투갈어의 실수도 발견되었음
- 또한 영양정보도 불완전. 심각한 문제의 한 가지는 정확하게 글루텐표시를 하고 있는 제품이 절반 정도 밖에 안 되었다는 점
- 나머지 반은 글루텐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 현재는 이 표기사항이 필수가 되어, 이후 수출되는 식품의 대응이 필요

<영양표시 예시(가로)>

INFOMACAO NUTRICIONAL Porcao g ou ml(medida caseira) 영양표시		
Quantidade por porcao (단위 당 수량)		%VD(1일 당 가치)
Valor energetico 열량	(Kcal=KJ)	
Caboidratos 탄수화물	G	
Protein 단백질	G	
Gorduras totais 총지방	G	
Gorduras saturadas 포화지방산	G	
Gorduras trans 트랜스지방산	G	(nao declarar)
Fibra alimentar 식물섬유	G	
Sodio 나트륨	MG	
"Nao comtem quantidade significativa de(valor energetico e/ou os nomes dos nutrientes)"		

<영양표시 예시(세로)>

Informação Nutricional: Porção g ou ml (medida caseira) Valor energético... kcal = kJ (...% VD); Carboidratos...g (...%VD); Proteínas ...g (...%VD); Gorduras totais ...g (...%VD); Gorduras saturadas ...g (...%VD); Gorduras trans ...g (...%VD); Fibra alimentar ...g (...%VD); Sódio ...mg (...%VD). "Não contém quantidade significativa de...(valor energético e/ou os nomes dos ingredientes)".

* % Valores Diários com base em uma dieta de 2.000 kcal ou 8.400 kJ. Seus valores diários podem ser maiores ou menores dependendo de suas necessidades energéticas.

- 다른 문제는 제조자에 대한 정보임. 절반 이상의 제품이 수입자의 명칭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주소, 전화번호 등의 상세정보가 없었음
- 이로 인해 고객이 질의가 있어도 수입자나 제조자에 문의를 할 수가 없음
- 또한 제품에 중량에 관해서도 잘못된 정보가 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음
- 마지막으로 많은 회사가 영양성분을(포르투갈어가 아닌) 원산국의 언어로 표시하고 있었음. 브라질의 법령에는 영양정보의 포르투갈어 표시가 의무임
- 유전자 조작품을 원료로 한 식품에 관해서도 표시의무가 있음

<올바른 표시라벨의 예>



VIII 브라질 바이어 정보

※ 바이어 리스트는 별도 엑셀 파일로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브라질 농림부 : www.deptan.go.id
- 브라질 관세청 : www.beacukai.go.id
- Ministry of Trade(무역부) : www.kemendag.go.id
- 브라질 해양수산부 : www.kkp.go.id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www.qia.go.kr
- 농수산물식품 수출지원정보 : <http://www.kati.net/>
- 관세청 : www.customs.go.kr
- GTA : <http://www.tradestatistics.com/gta/>